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30호

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6호(2021.6.10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3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치	구역면적(㎡)	추진단계	비고 (최초결정고시)
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1-6번지 일대	23,094	조합설립인가 (인가일 : 2023.7.28.)	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66호 (2021.6.10.)

○ 해제기한 연장 : 2028. 7. 28. 까지(2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648) 및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(☎02-2670-3802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